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신고) 내용

취급시설	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시설종류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이용 [] 곤충이용		
	설치·운영 장소(규모)		
	안전관리등급		
	취급 병원체의 명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에 대하여

[] 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붙임서류	뒤쪽 참조	뒤쪽의 수수료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서류	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4.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만원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 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